

개정법률

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(2018.9.21. 개정 시행)

개정전	<p>제6조(승진임용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.</p> <p>2.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)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가. 강등·정직: 18개월</p> <p>나. 감봉: 12개월</p> <p>다. 견책: 6개월</p>
개정후	<p>제6조(승진임용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.</p> <p>2.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)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가. 강등·정직: 18개월</p> <p>나. 감봉: 12개월</p> <p>다. 견책: 6개월</p>

경찰장비관리규칙(2018.10.4. 개정 시행)

개정전	<p>제120조(무기·탄약의 회수 및 보관)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·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</p> <p>2.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</p> <p>3. 사의를 표명한 자</p> <p>②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·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.</p> <p>1.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</p> <p>2. 주벽이 심한 자</p> <p>3. 변태성벽이 있는 자</p> <p>4.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</p> <p>5.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</p> <p>③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·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</p> <p>2.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</p> <p>3.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
-----	---

개 정 후	<p>제120조(무기·탄약의 회수 및 보관)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·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2.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3. 사의를 표명한 자 <p>②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(이하 '심의위원회'라 한다.)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·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2.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3.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4.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<p>③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에 규정한 사유들이 소멸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 회수의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④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·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.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.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<p>제120조의2(심의위원회 구성) ① 무기·탄약 회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회수의 해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기관의 장 소속 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</p> <p>제120조의3(심의위원회 운영)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대상자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</p> <p>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</p>
-------------	---

<p>청원경찰법</p> <p>청원경찰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- 청원경찰의 단체행동권 등은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 신경안써도 됩니다.</p>

<p>도로교통법</p>

1. 노면전차(트램)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,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 - 기존 법 조항에 있는 차의 개념에 노면전차만 포함 시키면 되니 굳이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.
2. 어린이, 노인,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,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·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, 자전거 운전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함 - 이 부분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 및 처벌(음주운전 과태료 3만원, 음주측정거부 과태료 10만원)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
3.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(도로 외의 곳을 포함)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. -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은 부분입니다.
4.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 -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은 부분입니다.
5. 갱신 시 ‘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’ 등 고령 운전자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,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그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. -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은 부분입니다.
6.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함. -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서 임의적 취소사유로 바뀌었습니다.
7.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-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은 부분입니다.

출입국관리법

제10조(체류자격)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.

1. 일반체류자격: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
2. 영주자격: 대한민국에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-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.

제10조의2(일반체류자격)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(이하 “일반체류자격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- 외국인의 영주자격과 체류자격을 구분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입니다.

1. 단기체류자격: 관광,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(사증면제협정이

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
2. 장기체류자격: 유학, 연수, 투자, 주재,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

제10조의3(영주자격)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(이하 “영주자격”이라 한다)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-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얻는 경우에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.

제29조의2(외국인 긴급출국정지) - 국민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규정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입니다.

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이 제4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6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출국금지”는 “출국정지”로, “긴급출국금지”는 “긴급출국정지”로 본다.

제33조(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) -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을 신설한 것입니다.

③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(이하 “영주증”이라 한다)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
④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.

PS - 이상으로 2차 시험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 대해 정리를 마칩니다.

앞으로 개정되는 법률은 계속하여 추가해 드리겠습니다.